

## ●국토교통부고시 제2025-777호

「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에 따라 「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(2026~2035)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5년 12월 26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#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(2026~2035) 수립 고시

#### 1. 수립 사유

「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에 따라 도심융합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

#### 2. 주요 내용

##### 가. 계획의 범위

- 1) 시간적 범위 : 2026년 ~ 2035년(10년)
- 2) 공간적 범위 :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와 「지방분권 균형발전법」 제5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지방 대도시

##### 나. 계획의 비전과 목표

- 1) 비전 :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, 혁신으로 도약하는 지방 대도시
- 2) 목표 : ① 매력적 공간과 네트워크 응집으로 지역인재의 성장·기회 거점 조성, ② 기업·기술·투자가 융합하는 균형성장과 혁신의 용광로 형성

##### 다. 추진 전략

- 1) 청년·지역인재의 정주·일자리 거점 : 고밀도 복합 공간과 직·주·락 결합 정주·생활·문화 기반으로 고부가 일자리 공급과 삶의 질 혁신
- 2) 메가시티의 개방형 혁신 플랫폼 : 초광역권의 분절·파편적 혁신 자원을 물리·기능적으로 결집·복합화하고 고속·광역교통망 연계
- 3) 기업·기술·투자의 통합 지원 앵커 : 인재 육성, R&D, 기업 기술·투자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혁신 생태계의 전 주기 지원 시스템 구축

##### 라. 정책과제

- 1) 기업·인재의 유치·착근을 위한 전후방 지원생태계 형성
- 2) 청년·여성·지역인재 선호에 부합하는 장소 브랜드화
- 3) 5극3특 메가시티에 상응한 특구 최적화 및 추가 육성
- 4) 사업방식 다각화와 특구의 차별적 브랜드 제고
- 5) 정부·지자체의 기업·인재·사업 지원 실효성 제고

#### 3. 기타 참고사항

- 「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(2026~2035)」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(<https://molit.go.kr>)-뉴스·소식 /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